어문 교육 학부 - 청소년교육복지과 **청소년상담사**

2021261041 오윤지

Q. '청소년상담사_자격증'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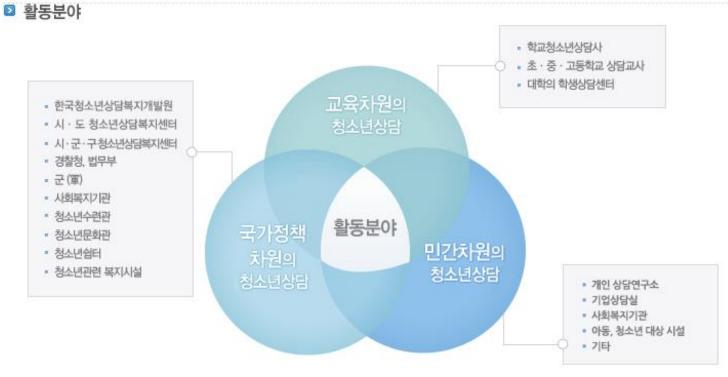
-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

급	주요 역할	세부내용
1급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 (지도 인력)	" 청소년상담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 상담기관 설립 및 운영 " 청소년들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 2급 및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2급	청소년 정신을 육성하는 청소년 상담사 (기간 인력)	 청소년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청소년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3급 청소년상담사 교육 및 훈련
3급	유능한 청소년 상담사 (실행 인력)	" 기본적인 청소년상담 업무 수행 " 집단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수행 " 매체상담 및 심리검사 등의 실시와 채점 " 청소년상담 관련 의뢰체계를 활용 " 청소년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

Q. '청소년상담사_직업' 란?

- 상담 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다음 여성가족부 장 관으로부터 청소년상담사의 국가자격을 부여받는다.
- 청소년상담사의 주요 활동으로, 1급은 청소년 상담을 주도하는 지도인력으로서 청소년 상담에 관한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 청소년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2급과 3급은 청소년상담

사를 교육하고 훈련



Q. '청소년상담사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인권보호를 위한」 청소년상담사 실천 서약서

- 서문 -

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성평등 문화 구축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청소년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의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및 성별 고정관념적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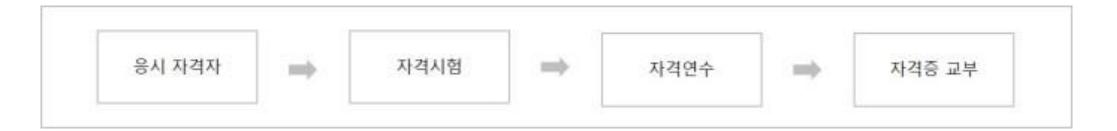
상담 시 사람의 외모나 신체적 특성을 희화화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의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자격시험에 대해 좀 더 알려주세요.

- 청소년 상담사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의 3단계로 구분되고, 응시자격은 제한이 있음
-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통과한 후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자격 요건	비고
1급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4년 3. 2급 자격증 + 3년
2급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 · 교육학 · 심리학 · 사회사업(복지)학 · 정신의학 · 아동(복지)학 ·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3년 3. 3급 자격증 + 2년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상당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END